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(강석주 의원 발의)

의안 번호	1614
----------	------

발 의 년 월 일: 2024년 02월 05일

발 의 자: 강석주 의원(1명)

찬 성 자: 김영옥, 남창진, 도문열,
민병주, 박춘선, 신동원,
신복자, 이숙자, 이종환,
최윤희 의원(10명)

1. 제안이유

- 특정 법인 및 단체 등에게 과점적으로 사회복지시설이 위탁됨에 따라, 조례 개정을 통해 이를 방지하고 민간위탁의 공정성 및 효율성을 높여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주민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.
- 아울러, 사회복지시설의 임원에 대한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 정지를 규정하여 복지시설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“재위탁”의 정의를 정비함 (안 제2조)
- 나. 수탁기관의 선정기준에 수탁자의 수행 능력의 기준을 규정함(안 제7조)
- 다. 수탁기관의 임원의 관리능력 및 공신력 강화를 위한 해임명령 및 직무집행정지를 규정함(안 제9조, 제9조의2 신설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령 :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, 지방자치법 제117조,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
- 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 (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)

다. 기타 : 해당사항 없음

서울특별시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3호 중 “사회복지시설에 대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”을 “사회복지시설을 공개모집으로 다시”로 한다.

제7조제2항 중 “제1항”을 “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, 제1항”으로 한다.

제9조 및 제10조를 각각 제10조 및 제11조로 하고, 제9조 및 제9조의2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9조(임원의 해임명령) ① 시장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에 따른 임원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

명할 수 있다.

제9조의2(임원의 직무집행 정지)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.

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우
2.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
3.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 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의 재산·보조금에 대하여 회계부정, 횡령 또는 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수행시의 뇌물수수 또는 배임(背任)행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수사 및 기소 중인 경우

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 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 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 1. 2. (생 략) 3. “재위탁”이란 민간위탁하여 운영 중인 <u>사회복지시설에 대 해 기존 수탁기관과의 위탁기 간 만료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새로운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하는 것을 말한다.</u> 4. (생 략)	제2조(정의) 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----- ----- <u>사회복지시설을 공 개모집으로 다시</u> ----- ----- ----- -----.
제7조(수탁자 선정) ① (생 략) ② 시장은 수탁자를 선정(재위 탁, 재계약 포함)하는 경우에는 <u>제1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 의를 거쳐야 한다.</u> ③ ~ ⑥ (생 략)	제7조(수탁자 선정) ① (현행과 같 음) ② ----- ----- <u>수탁자의 재정적 능력, 공신력, 사업수행능력, 지역간 균형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하며, 제1항---</u> ③ ~ ⑥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<u><신 설></u>	제9조(임원의 해임명령) ① 시장은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18조에 따른 임원이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2조에 해당하는 경우 법인에 그 임원의 해임을 명할 수 있다.
<u><신 설></u>	제9조의2(임원의 직무집행 정지) ① 시장은 제9조에 따른 해임명령을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다. 다만,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2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해임명령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임원의 직무집행을 정지시켜야 한다. 1. 「사회복지사업법」 제22조제1항 각 호의 사실 여부에 대한 조사나 감사가 진행 중인 경

현행	개정안
<u>제9조 · 제10조</u> (생략)	<u>우</u> <u>2. 해임명령 기간 중인 경우</u> <u>3. 임원이 해당 사회복지법인</u> <u>또는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</u> <u>사회복지시설의 재산 · 보조금</u> <u>에 대하여 회계부정, 횡령 또는</u> <u>절취를 하거나 그 업무 수행시</u> <u>의 뇌물수수 또는 배임(背任)행</u> <u>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수</u> <u>사 및 기소 중인 경우</u> <u>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임원의</u> <u>직무집행 정지사유가 소멸되면</u> <u>즉시 직무집행 정지명령을 해제</u> <u>하여야 한다.</u> <u>제10조 · 제11조</u> (현행 제9조 및 제10조와 같음)

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

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

1. 판단 근거

-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2조(정의), 제7조(수탁자 선정), 제9조(임원의 해임명령), 제9조의2(임원의 직무집행 정지) 등을 변경·신설한 안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- 현행 같은 조례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제3항1)에 따라 같은 조례안 제2조(정의)의 “사회복지시설을 공개모집으로 다시”는 정의를 구체화한 것으로 서울시 재정수입 순감소나 재정지출 순증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

2. 작성자

시의회사무처	재정분석담당관
담 당 관	오희선
추계세제팀장	이정수
추 계 분 석 관	손제승
	☎ 02-2180-7954
	e-mail : smclt22@seoul.go.kr

※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.

1) 제6조(관리·운영의 위탁) ③ 제1항에 따른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할 때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며, 위탁기간은 「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」 제21조의2제2항을 준용하여 5년으로 한다. 다만,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한차례에 한정하여 재계약을 할 수 있다. <개정 2018.5.3.>